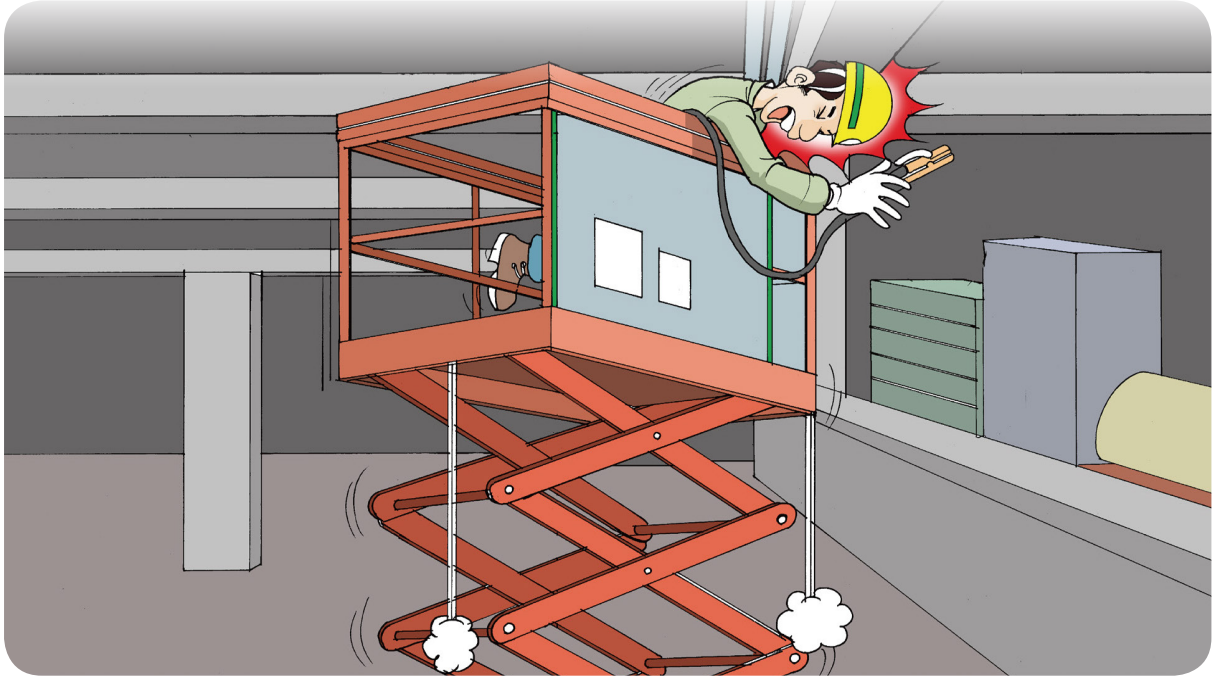




고소작업대 상승 작업 중 천장 부분에 끼임



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채로 지하1층 주차장 천장에 가용접되어 설치된 강관 스프링클러배관에 용접 중 이동하여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 상승 운전을 하다가 고소작업대 상부 안전난간대와 스프링클러배관 사이에 머리가 끼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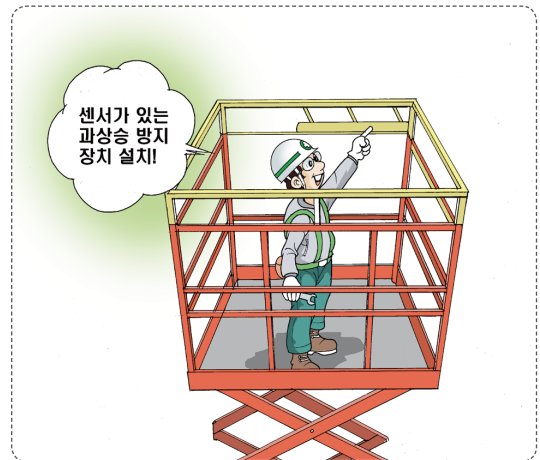
재해발생 원인

- ▶ 고소 작업대의 과상승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
 - » 과상승방지장치(리미트스위치)를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약15cm 정도로 이동 설치함으로써 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음
- ▶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하나, 페인트 및 이물질 등으로 방향표시가 보이지 않은 상태



재해예방 대책

- ▶ 고소작업대 상승 시 근로자 끼임 방지용 과상승방지 장치는 끼임·부딪힘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의 자세, 위치등을 고려하여 적정높이(작업자의 키보다 높게 설치)로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
- ▶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
- ▶ 해당 작업에 따른 떨어짐·맞음·넘어짐·끼임 및 무너짐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 및 근로자에게 주지



참고법령 및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(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)
- KOSHA Guide C-74-2015(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)



고소작업대 안전작업



주요 안전 확인사항

- ▶ 고소작업대의 종류, 작업의 경로 및 방법, 지면 상태 및 안전장치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.
- ▶ 작업계획서 작성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, 그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.
- ▶ 사용 장비는 위험기계·기구의 안전 인증고시에 의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한다.
- ▶ 근로자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 해제를 하면 안된다.
- ▶ 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에 근로자는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.
- ▶ 고소작업대의 계획된 작업반경 및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한다.
- ▶ 연약지반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아웃트리거는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설치한다.
- ▶ 고소작업대를 수직상승한 상태에서 작업대 측면에 케이블 등의 중량물을 매달아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▶ 경사지에서 작업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,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한다.
- ▶ 고소작업대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.
- ▶ 비, 눈,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철골작업 중지 또는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기준을 준용한다.
- ▶ 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대 상부 난간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.
- ▶ 작업 중에 작업대의 난간대 해체를 금지하고, 탑승 후에 출입문을 고정한다.
- ▶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작업시 하부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,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.
- ▶ 충전전로의 인근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·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고,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.
- ▶ 고소작업대의 이동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,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금지, 이동 중 넘어짐(전도)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, 이동 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을 확인한다.

